

## 5.1.25 대학혁신지원사업비집행에관한규정

제정 2019. 06. 04.

개정 2020. 08. 19.

개정 2023. 11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계정관리 및 회계연도) ①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(계좌)을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② 사업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로 하며,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연도를 구분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집행원칙) 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
② 당초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집행하되, 추후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.

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일반 교비와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한다.

④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며,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이 사업은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」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집행에관한규정 및 대학 회계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집행한다.

제6조(사업추진절차) ① 사업주관부서는 시행 부처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사업비를 배분한다.

② 사업추진부서는 세부 사업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다.

③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는 제반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.

④ 사업추진부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되,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사업비 지출 시 사업관리부서의 컨설팅 및 통제를 거치며,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계획 수립 시에 단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8.19., 2023.11.30.>

⑤ 자체위원회는 제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.

⑥ 사업추진부서는 세부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
⑦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환류 계획을 점검 및 시행한다.

제7조(사업계획 변경)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세부 사업 또는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사업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지체 없이 사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관부서는 사업계획 변경 사안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심사 받으며,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사후 보고한다. <개정 2020.08.19.>

③ 사업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 성과 달성의 수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비의 변경

2. 국고 집행 절감 노력을 통한 사업비의 감액
3. 기타 사업 추진 상 부득이한 사업 계획의 변경

제8조(사업비 집행 점검) ①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.

- ②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국고지원금 관리) ① 사업비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동 사업비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·관리한다.

- ② 사업비 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는 중앙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8.19.>

제10조(잔액 및 이자) ① 국고 지원금(발생이자 포함)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,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 가능하며,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한다.<개정 2020.08.19.>

- ②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사용내역을 포함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8.19.>
- ③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 및 이자는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11.30>

제11조(세부사항)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폐지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